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빈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가 안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고 있고 운행제한 차량에 대해 1회 20만원, 최대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가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3개 시·도가 과태료 부과 횟수(기준)를 1일 1회에서 1개월 1회로 완화하기로 협의하였고 환경부가 지난해 4월에 3개 시·도에 해당 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협의에 따라 1개월간 1회까지만 실제 부과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업무 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횟수를 현행 1일 1회에서 1개월 1회로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